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 2013.03.14 조례 제2032호

(일부개정) 2015.03.03 조례 제2118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3.01 조례 제220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9.11 조례 제2356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12.26 조례 제2432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12.22 조례 제2515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20.12.22.>
 - 1. 목욕비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2. 이ㆍ미용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군수와 협약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 과 같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2.>
 - 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 바우쳐 카드(이하 "카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2. 지원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5조(발급시기) 카드를 발급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배부는 읍·면장을 통해 한다.
 - 1.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일괄 발급하여 배부한다.
 - 2. 제2조제2항에 해당자인 경우는 결정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 **제6조(카드의 사용)** 카드는 산청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군수와 협약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산청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통상적 인 이용요금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목욕 및 이·미용 요금 적용에 관한 협정」
 - 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20.12.22.>
 -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지급 청구를 할 때에는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개정 2020.12.22.>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1. 지원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0.12.22.>
 -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의 수불 관리)** 군수는 복지지원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19.12.26.,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종 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2.22.>]
-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체결 업소, 수탁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2.>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2.>]

부칙 〈조례 제2032호, 2013.3.14.〉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주민복지과장"을"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

부칙 〈조례 제2515호, 2020.12.2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